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낙관 의원 외 14명

2. 제안이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특성화된 상가지역을 발굴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거리 조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안 제3조, 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특화거리 지정 기준 및 신청·취소 (안 제6조 ~ 안 제8조)
- 지원사업 (안 제9조)
- 특화거리 사업평가 (안 제10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 기 타 : 조례안 예고(2021. 6. 28. ~ 7. 5.)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 음식, 문화 등 밀집되어 있는 주요 상가 지역을 발굴하여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써,
 -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으로 특색 있는 상권이 형성된다면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유동 인구를 이끌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특화거리 지정 시 지역상권과 트렌드를 정확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지정하고 특화거리 지정 후 유명무실한 거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